



“전국 최초 문자예약전송” 산지전용허가 기간만료 알림서비스

기존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허가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않으면 새로운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함으로써 부담금 추가발생에 대한 **금전적 손실**과 허가서류 재작성 및 협의시간 소요로 시간적 손실, 개정법령 및 서류검토 등 **행정력 낭비**가 발생되었음
※ 기간만료 전 사전안내는 산지관리법 규정상 의무사항이 아닌 행정서비스임

개선 산지전용 수허가자를 대상으로 **문자전송시스템 예약전송기능**을 활용하여 허가시 **기간 만료 사전안내 메시지**를 입력하여 기간만료 30일전, 20일전 2회로 자동전송 되는 알림 서비스 시행
※ 타기관 유사사례 검토하여 행정력 낭비와 사전안내 누락발생 개선

효과 금전적 · 시간적 · 행정력 낭비 등을 예방하여 행정신뢰도 향상으로 **유사업무 및 타 행정기관에 적용 확대**